

청주지방법원 2021. 11. 4 선고 2021가단580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

피 고 1. A

2.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21.

판 결 선 고 2021. 11. 4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1,960,544원 및 그 중 11,788,720원에 대하여 2020. 12. 31.부터 2021. 8. 18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0. 6. 13.자 매매계약은, 11,960,544원 및 그 중 11,788,720원에 대하여 2020. 12. 31.부터 2021. 10. 21.까지 연 1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3.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,960,544원 및 그 중 11,788,720원에 대하여 2020. 12. 31.부터 2021. 10. 21.까지는 연 10%,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현수

별지